

③환경교육·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중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제2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로 한다.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수립) 시장은 5년마다 시민 또는 관계전문가·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야생 동·식물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시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계획)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계획을 수립·시행되며, 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지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태계보전지역내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 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4.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태계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의 제목 “자연보호운동 및 시민참여 등”을 “시민참여 등”으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중 “하천의”를 “하천 및 생태계보전지역의”로 한다.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경 위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 321 호

다. 제출일자 : 2003. 9. 26

라. 회부일자 : 2003. 9. 29

2. 제 안 사 유

-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산정방법을 변경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 요 골 자

가.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에서 열 판매비 등 수입금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물처리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1항)

나. 자원회수시설이 소재한 자치구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 가산금의 요율을 현행 100분의 32내지 43에서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100분의 10으로 조정함.(안 제3조제2항)

다. 시장이 폐기물소각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난방 열원의 판매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소각열을 공급받는 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3조제5항)

라. 시장이 법인 또는 단체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8조·제11조)

○ 자원회수시설 : 양천·노원·강남·마포 자원회수시설

○ 주민편익시설 : 양천·노원·강남 주민편익시설

마. 반입수수료에 대한 개정규정은 시설소재지 주민과의 시설 운영개선에 대한 협의기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개정된 반입수수료의 50% 적용

○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개정된 반입수수료의 75% 적용

○ 2005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제5조의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제5조·제35조),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제4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1조 내지 제16조),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 - 별첨

나. 예산조치 : 반입수수료 및 주민지원출연금에 관하여 예산담당관과 협의